

(비공식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 9/2560 호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촉진 방안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사용,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계 장치 개선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 설계 및 R&D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 16조 두 번째 단락, 제 18조, 제 28조 및 제 31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시하는 바이다.

1. 생산 효율성 촉진 방안에 대한 2014년 9월 16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1/2557호를 폐지한다.
2.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사용 또는 환경 유해요소 절감하기 위한 투자촉진 방안
 - 2.1 이 방안은 투자청 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만약, 투자청의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해당 활동은 촉진 신청 시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대상으로 고시한 활동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 2.2 기존의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기간이 종료된 때 이 방안에 따라 생산 효율성 개선 촉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투자위원회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한 특정 방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 2.3 각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1백만 바트 이상(토지 비용과 운영경비 제외)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각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50만 바트(토지 비용과 운영 경비 제외)이다.
 - 2.4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2.4.1 모든 투자청 촉진 및 비촉진 프로젝트의 총 순 고정자산 및 총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은 2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 2.4.2 태국 국적자가 등록 자본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 2.5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도입하거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계 교체 또는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5.1 규정된 비율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신 기술로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2.5.2 총 에너지 소비 대비 정해진 비율만큼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개선에 대한 투자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해야 한다.

2.5.3 규정된 바에 따라 폐기물, 폐수 또는 배기오염과 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계 개선에 대한 투자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2.6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2.6.1 기계 수입관세 면제.

2.6.2 기존 프로젝트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3년 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6.3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은 촉진 인증서 발급 후 매출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

2.7 신청서는 2030년 12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8 기존의 모든 투자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방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생산 기계 교체 및 개선을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3.1 이 방안은 투자청 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만약, 투자청의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해당 활동은 촉진 신청 시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대상으로 고시한 활동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3.2 기존의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기간이 종료된 때 이 방안에 따라 생산 효율성 개선 촉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투자위원회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한 특정 방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3.3 각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1백만 바트 이상(토지 비용과 운영경비 제외)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각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50만 바트(토지 비용과 운영 경비 제외)이다.

3.4 중소기업(SMEs) 프로젝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3.4.1 모든 투자청 촉진 및 비촉진 프로젝트의 총 순 고정자산 및 총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은 2 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3.4.2 태국 국적자가 등록자본 51% 이상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3.5 신청자는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해 생산라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기계 교체 또는 개선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6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3.6.1 기계 수입 관세 면제.

3.6.2 기존 프로젝트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3 년 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동화 시스템 투자의 경우, 태국 자동화 산업과의 연계 가치가 자동화 시스템 총 가치의 30 % 이상에 달한다면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는 투자액(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의 100 % 로 상향된다.

3.6.3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은 촉진증명서 발급 후 매출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

3.7 신청서는 2030 년 12 월 30 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 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8 기존의 모든 투자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방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4.1 이 방안은 투자청 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만약, 투자청의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해당 활동은 촉진 신청 시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대상으로 고시한 활동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4.2 기존의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기간이 종료된 때 이 방안에 따라 생산 효율성 개선 촉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투자위원회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한 특정 방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4.3 각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1 백만 바트 이상(토지 비용과 운영경비 제외)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각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50 만 바트(토지 비용과 운영 경비 제외)이다.

4.4 중소기업(SMEs) 프로젝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4.4.1 모든 투자청 촉진 및 비촉진 프로젝트의 총 순고정자산 또는 총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은 2 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4.4.2 태국 국적자가 등록 자본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4.5 신청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6 연구·개발 또는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비용은 투자촉진 신청서 제출로부터 최초 3 년 간 총 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5% 이상이어야 한다.

4.7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4.7.1 기계수입 관세 면제

4.7.2 기존 프로젝트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3 년 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4.7.3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은 촉진증명서 발급 후 매출 발생일부터 시작된다.

4.8 신청서는 2030 년 12 월 30 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 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4.9 기존의 모든 투자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방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농산업을 국제 표준을 갖출 수 있기 위한 투자촉진 방안

5.1 이 방안은 투자청 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만약, 투자청의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해당 활동은 촉진 신청 시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대상으로 고시한 활동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5.2 기존의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기간이 종료된 때 이 방안에 따라 생산 효율성 개선 촉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투자위원회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한 특정 방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5.3 각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1 백만 바트 이상(토지 비용과 운영경비 제외)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각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은 50 만 바트(토지 비용과 운영 경비 제외)이다.

5.4 중소기업(SMEs) 프로젝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5.4.1 모든 투자청 촉진 및 비촉진 프로젝트의 총 순고정자산 또는 총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은 2 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5.4.2 태국 국적자가 등록 자본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5.5 농업이 GAP, FSC, PEFCs, ISO 22000, ISO 14061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타 국제 표준을 충족하여 농업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획에 따른 투자 및 지출액이 발생해야 하며, 국제표준은 투자촉진 인증을 발급일로부터 3 년 내에 획득해야 한다.

(참고: GAP(Good Agriculture Practices, 좋은 농업 실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PEFCs(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

ISO 22000(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14061(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지속적인 산림 관리 시스템))

5.6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5.6.1 기계 수입관세 면제

5.6.2 기존 프로젝트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3 년 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6.3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은 촉진증명서 발급 후 매출 발생일부터 시작된다.

5.7 2020 년 12 월 30 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8 기존의 모든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 방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2017 년 9 월 15 일부터 발효한다.

고시일 2017 년 10 월 28 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